

응용과학대학 장학내규

제1조 (목적)

본 내규는 응용과학대학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본 내규는 응용과학대학에 적용한다.

제3조 (장학위원회)

-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.
- ② 장학위원회는 응용과학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응용과학대학 행정실장으로 한다.
-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장학정책의 수립
 2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 3.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) ① 장학금의 종류는 교외장학, 교내장학, 기타장학으로 구분하며, 교내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[별표1]과 같다.

- ② 교외장학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2.0 이상인자로 하며, 전과(전출)예정자는 제외한다.
- ④ 장학금심사 해당학기에 본 대학 전공과목을 3과목이상(밝은사회장학(단대학생)은2과목이상),1학년은 전공교양 교과목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.
- ⑤ 밝은사회장학(해외연수/해외인턴십,GC Summer Program),우정장학의 경우 제3,4항의 지급기준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
- ⑥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,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본 내규에 따른다.

제5조(장학생 선발) ① 본 대학장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 기준은[별표1]과 같다.

- ② 동점자의 경우 전공이수학점수, 전체이수학점수, 연소자 순으로 한다.

제6조(장학금의 지급제한) ①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장학생인 자가 학칙, 학생생활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
2. 성적경고자 및 졸업유예자
3.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
4. 휴학자

제7조(이중 지급 중지) ① 본 내규에 규정된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기부자 장학, 실기B장학(단대우수학술), 밝은사회장학(단대봉사,해외연수/해외인턴십,GC Summer Program), 해외관련프로그램(해외탐방,해외봉사,해외연수,해외인턴십,국제교류처 Faculty-Led Program등) 장학은 예외로 한다.

제8조(장학금 지급기한)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학의 특성에 따라 학년말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등록) ① 장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칙)

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0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본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본 내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본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본 내규는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

장 학 명	지 급 기 준	선발절차	지급액
성적우수장학	- 수석, 차석, 평점4.0 이상인 자	-학과별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 -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발함	-수석: 등록금전액 -차석: 등록금반액 -4.0이상자: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
모범장학	- 평점 3.5이상인자	-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	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
우정장학 (가계곤란)	- 가정형편곤란자(부모실직, 소년소녀가정, 저소득대상자,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곤란자나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재학생 등)	-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발함	등록금 이하
실기B장학 (단대우수학술)	- 재학중 연구에 특별한 업적을 성취한 학생에게 수여 - SCIE(SCOPUS포함)논문 게재 및 학술진흥재단등재 논문게재(등록포함), 국내외특허취득(인증)서류, 기타 증빙서류	-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	[별표3]기준에 의함
	-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술동아리		장학위원회 결정 연1회
밝은사회장학 (단대봉사)	-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학과장 또는 학장이 추천한자 - 사회봉사, 해외봉사, 효행봉사 -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	-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	등록금 이하
성적향상장학	-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.50 이상 2.0이하인 자로서 당해학기 3.5 이상 취득자	- 성적향상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발	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
밝은사회 장학 (해외연수/해외인턴십)	- 연수목적, 외국어능력, 직전학기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	- 신청서 제출자 중 심사에 의하여 선발 함	등록금 이하
밝은사회장학 (단대 학생)	- 학생회 간부,학과별 학생장 및 학년대표등	- 학생회 추천	등록금 이하
밝은사회장학 (GC Summer Program)	- 국제교류처 GC수강자 - 수강료 일부 지원		장학위원회 결정
기타장학	- 학생지원센터의 규정에 의함	- 학생지원센터의 규정에 의함	학생지원센터의 규정에 의함

[별표2]

장학종류별 제출서류

장 학 명	제 출 서 류
성적우수장학	해당없음
모범장학	장학금신청서, 자기소개서
우정장학 (가계곤란)	장학금신청서, 학과장추천서, 자기소개서 및 아래 해당서류 ① 생활보호대상자 -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1부 ② 저소득 대상자 - 소득금액증명원(부,모) 각 1부 ※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· 직장인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, · 자영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 ·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: “소득이 없다” 사실증명원(세무서발급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부,모,본인)각 1부, 건강보험증 사본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,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(부,모,본인)각 1부 ※ 지방세 부과 사실이 없을 경우 “지방세 납부 사실이 없음” 증명원 발급 ③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-양친유고 본인가장 -부모장애자(3급이상) -기타 생활고 확인서
실기B장학 (단대우수학술)	장학금신청서, 학과장추천서, SCIE(SCOPUS포함)논문 및 학술진흥 재단등재논문 게재(등록포함), 국내외 특허취득(인증)서류, 기타증빙 서류 장학금신청서, 추천서, 동아리활동관련증빙서류
밝은사회 장학 (단대봉사)	장학금 신청서, 성적증명서, 추천서, 자기소개서
성적향상장학	장학금신청서, 자기소개서
밝은사회 장학 (해외연수/해외인턴십)	- 해외연수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, 성적증명서, 자기소개서 외국어능력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밝은사회장학 (단대 학생)	해당없음
밝은사회장학 (GC Summer Program)	해당없음
기타장학	별도공지

[별표3]

실기B장학(단대우수학술) 지급기준

- 실기B장학(단대우수학술)중 연구실적의 지급기준은 아래의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또한, 논문 1편당 지급기준은 아래의 장학금액의 기준을 넘지 못한다.
 가. 국내외 특허취득은 인증만을 구분하여 지급하며,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구 분	장 학 금 액		비 고
	주 저 자	공동저자	
SCIE	₩1,000,000 이하	₩500,000 이하	응용수학과의 경우 SCOPUS를 SCIE급으로 인정
SCOPUS	₩600,000 이하	₩300,000 이하	
학진 등재지	₩300,000 이하	₩150,000 이하	응용수학과의 경우 등재후보지 인정

※ 국제1급 학술지 : SCIE, SSCI, A&HCI

- 실기B장학(단대우수학술)중 우수학술동아리의 경우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